

광주광역시서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조치명령미이행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 제안이유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의무위반 및 조치명령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처분 대상이 확대되어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이 필요함.

2. 주요골자

- 제명을 “광주광역시서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로 함
- 과태료 처분 시 피처분자에게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였던 것을 피처분자 또는 대리인에게도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1항)
- 피처분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의견제출을 할 수 없었을 때에는 사유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제2항)
- 피처분자의 의견을 구청장이 수용하여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사항과 피처분자가 의견 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의견청취를 아니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제3항,제4항)
- 과태료납부 독촉을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에 할 수 있던 것을 “45일” 이내로 함. (안 제5조제2항)
- 과태료 부과기준이 종전 구청장의 조치명령 미이행자에게만 적용되었으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의무위반자 및 구청장의 조치 명령 미이행자에게 확대 적용하고 이 경우 하나의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 그중 가장 금액이 많은 하나에 대해서만 부과하도록 함. (안 제6조제1항 및 별표)
-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참작하여 이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제2항)

3. 참고자료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3항, 제10조, 제14조, 제15조제2항, 제21조, 제22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36조제3항, 제42조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제1항제5호, 제42조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8조
-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중해정규정 (환경부예규224호, 2003.1.20개정)

4. 검토의견 (전문위원 서 동 근)

본 조례개정안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라, 제명을 “광주광역시서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로, 피의자 “의견진술”을 “의견제출”로 개정하는 안이며, 과태료부과 기준이 종전 구청장의 조치명령 미이행자에게만 적용되었으나 의무위반자 및 구청장의 조치명령 미이행자에게 확대적용 하는 등 과태료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 중 개정규정 되었기에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